농어촌 주민 등의 이동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515

발의연월일: 2025. 4. 1.

발 의 자 : 윤준병ㆍ허 영ㆍ장철민

김태선 · 정동영 · 송옥주

서영교 • 주철현 • 김윤덕

박민규 • 이원택 • 강준현

김성회 · 허종식 · 박희승

박홍배 • 민병덕 • 김우영

신영대 · 문대림 의원

(20인)

제안이유

국민의 이동권은 정부가 최선을 다해 보장해야 할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임.

그러나, 최근 지방 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은 인구감소 및 고령화가 심화되어 2024년 기준 전체 228개 시·군·구 중에서 소멸위험지역은 130곳(57.0%)으로, 지난 2021년(108곳)보다 22개 시·군·구가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음.

또한 인구감소가 두드러진 농어촌·도서·벽지 지역 등에서의 교통 수요 역시 현저히 감소하다 보니 수도권 및 대도시 중심의 대중교통 (도시철도 및 노선버스 등)으로는 인구소멸이 진행되고 있는 대다수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이동권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

산업혁명과 경제발전이 이동의 자유를 획득한 때로부터 본격화되었 듯이 수도권 및 대도시 집중현상을 완화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의료·교육 등과 함께 교통서비스의 제공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바, 우선 국민이 향유해야 하는 기본적인 교통서비스수준을 설정하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러한 기본적인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책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새로운 제도의 구축이 시급함.

이에 농어촌 등 공공교통소외지역에서 기본적인 교통서비스를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교통소외지역을 비롯한 농어촌 주민 등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어촌 등 공공교통소외지역에서 기본적인 교통서비스를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써 공공교통소외지역 주민 등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누구

에게나 기본적인 교통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고, 대도시권과 공공교통소외지역간의 지역적 차이에 따라 기본적인 교통서비스 제공에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안 제3조).

- 다.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교통소외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비타당 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이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기본적인 교통서비스를 설계·관리하고, 이를 제공하여야 함(안 제6조).
- 마. 국토교통부장관은 인구감소 등에 따른 교통수요 부족으로 공공교 통수단이나 공공교통시설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여 주민의 일상적 인 이동에 제약이 발생하는 지역을 공공교통소외지역으로 지정·고 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바.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교통소외지역의 주민 등의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5년 단위의 '농어촌 주민 등의 이동권 보장 및 공공교통소외지역의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8조).
- 사.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농어촌 주민 등의 이동권 보장 및 공공교통소외지역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안 제9조).

- 아. 시행계획에 필요한 비용은 국고에서 보조하거나 부담하여야 하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교통소외지역 교통체계의 운영에 소요 되는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하여야 함(안 제12조).
- 자. 정부는 도시철도가 운행되지 않는 공공교통소외지역의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65세 이상 어르신 등의 교통요금을 무임으로 하며, 면제된 공공교통수단의 운임 비용의 100분의 60 이상을 부담하도록 함(안 제13조).
- 카. 농어촌 주민 등의 이동권 보장 및 공공교통소외지역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지방자 치단체에 공공교통소외지역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4조).
- 타.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증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교통과 관련하여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농어촌 주민 등의 이동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촌 등 공공교통소외지역에서 기본적인 교통 서비스를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교통소외지역 주민 등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 2. "이동권"이란 누구든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일반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 등을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원하는 목적지로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3. "기본적인 교통서비스"란 주민 등이 원하는 목적지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공되어야 하는 교통수 단 운영과 비용지급서비스를 말한다.

- 4. "교통체계"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교통체계를 말한다.
- 5. "공공교통"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아래 국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공공교통수단 및 공공교통시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교통체계를 말한다.
- 6. "공공교통수단"이란 대중 일반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을 말한다.
 -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나.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차량
 -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철도차량
 - 라. 「해운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여객선 중 같은 법 제3조제 1호에 따른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선
 - 마.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선사업에 사용 되는 도선
 - 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
 - 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수단
- 7. "공공교통시설"이란 대중 일반의 교통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교통

-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 가. 터미널·정류소·차고지 등 제6호가목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 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원활한 운행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 작물
- 나.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 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승시설
- 마. 여객터미널, 선착장, 도선장, 접안시설 및 승하선 보조시설 등 여객선과 도선의 원활한 운항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
- 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택시공영차고지와 택시공동차고지
- 사.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주차 장 중 공공교통소외지역 교통의 중심이 되는 도시에 위치한 철 도역(鐵道驛) 인근에 설치되는 주차장이나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인근에 설치되는 주차장 또는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비행장의 인근에 건설되는 주차장
-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로서 공공교통 수단의 운행과 관련된 시설 또는 공작물
- 8. "공공교통운영자"라 함은 공공교통수단을 운행하거나 공공교통시 설을 경영·관리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법률」, 「해운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공교통수단 또는 공공교통시설의 사업에 대한 면허·허가·인가·위탁 등을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한 자
- 나. 공공교통수단의 운행 또는 공공교통시설의 경영·관리를 위하 여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에 등록・신고 등을 한 자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교통운영자
- 9. "공공교통소외지역"이란 인구감소, 고령화 등에 따른 교통수요 부족으로 공공교통수단 및 공공교통시설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여지역 주민의 일상적인 이동에 제약이 발생하는 지역으로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대도시권(이하 "대도시권"이라 한다) 이외의 지역 중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누구에게나 기본적인 교통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도시권과 공공교통소외지역간의 지역적 차이에 따라 기본적인 교통서비스 제공에서의 차별을 받지 아니

하도록 하고, 모든 국민이 적절한 기본적인 교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교통소외지역의 주민 등이 기본적인 교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공공교통을 운영하여야 한다.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교통소외지역의 주민 등이 비용부담 없이 기본적인 교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공공교통소외지역의 교통여건 개선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해당 법률에서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교통 소외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 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제2장 기본적인 교통서비스의 설계

제6조(기본적인 교통서비스의 설계 및 제공)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는 모든 국민이 이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기본적인 교통서비스 (이하 "기본서비스"라 한다)를 설계·관리하고, 이를 제공하여야 한 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서비스를 측정・설계・관리하기 위한 지표 및 기준을 설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한 후「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의심의를 거쳐야 한다. 고시된 기본서비스 지표 및 기준을 변경하려는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③ 기본서비스 지표 및 기준을 설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1. 지역별 교통서비스 제공 및 운영 실태
- 2. 농어촌의 공공교통수단 및 공공교통시설 현황과 기본서비스 제공 실태
- 3. 대도시권의 공공교통수단 및 공공교통시설 현황과 기본서비스 제공 실태
- 4. 그 밖에 기본서비스 지표·기준 설계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교통소외지역에 기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교통소외지역 내 공공교통수단 및 공공교통시설을 활용하고, 효율적인 교통체계를 구 축·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교통소외지역의 효율적인 교통체계

를 운영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가용자동차를 이 법 에 따른 공공교통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 ⑤ 시·도지사는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기본서비스 기준을 강화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 ⑥ 시·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기본서비스 기준을 강화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공공교통소외지역의 지정·고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도시권이외의 지역으로서 인구감소, 고령화 등에 따른 교통수요 부족으로 공공교통수단이나 공공교통시설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여 주민 등의 일상적인 이동에 제약이 발생하는 지역을 직접 또는 시·도지사의 요청에 의하여 공공교통소외지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공공교통소외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일일 공공교통 운행 횟수
 - 2. 주택의 버스정류장 평균 접근률
 - 3. 공공교통 요금 수준

- 4. 공공교통 배차시간 및 운행빈도
- 5. 인구감소 및 고령화율
- 6. 총 사업체 수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공교통소외지역을 지정하려면 미리 행정안전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 한 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④ 그 밖에 공공교통소외지역의 지정기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교통소외지역이 제4 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시·도지사에게 공공교통소외지역의 지 정·해제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3장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8조(농어촌 주민 등의 이동권 보장 및 공공교통소외지역의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교통소외지역의 주 민 등의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공 공교통소외지역이 포함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5년 단위의 '농어촌 주민 등의 이동권 보장 및 공공교통소외지역의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기본계획의 목표 및 단계별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 2. 국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서비스 수준의 설계 및 제공 에 관한 사항
- 3. 지역별 공공교통 현황 및 교통 여건의 전망과 교통수요의 예측· 분석에 관한 사항
- 4. 지역별 인구구조변화 및 인구감소에 따른 장기적인 교통수요의 예측·관리에 관한 사항
- 5. 대도시권과 공공교통소외지역의 기본서비스 제공 현황 및 불균형 극복에 관한 사항
- 6. 공공교통소외지역의 공공교통수단 및 공공교통시설 확보 방안과 다른 교통수단·시설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 7. 공공교통소외지역 기본서비스 수준의 정립·유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8. 공공교통소외지역의 원활한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공 공교통 영역 설정 및 공공교통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 9. 공공교통소외지역의 수요 응답형 교통서비스 확대ㆍ발전 및 기존

공공교통수단과의 연계, 정량적 시행효과 예측·분석에 관한 사항 10. 기본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운영과 투자의 우선순 위에 관한 사항

- 11. 그 밖에 농어촌 주민 등의 이동권 보장 및 공공교통소외지역 해소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공공교통운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장, 시·도지사 및 공공교통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따라야 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 전에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결정하거나 변경한 기본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관련 업무를 주업무로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제2항 각 호의 사항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방법・공표 및 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농어촌 주민 등의 이동권 보장 및 공공교통소외지역의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농어촌 주민 등의 이동권 보장 및 공공교통소외지역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걸쳐 시행계획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로 협의하여 광역 단위의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시행계획을 협의·조정한 후 매년 11월 30일 까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 ③ 그 밖에 시행계획의 내용과 수립·변경·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시행계획의 실적평가 및 사후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 도지사가 시행계획을 시행한 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적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실적평가를 실시한 결과 그 평가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재정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적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시행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개선을 권고하거나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선의 권고나 시정의 요청을 받은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⑤ 시행계획의 실적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이 법에 따라 수립되는 기본계획과 시행 계획은 다음 각 호의 모든 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수립하여야 한 다.
 - 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 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6조에 따른 중기 교통시설투자계획

3.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대 중교통기본계획

제4장 농어촌 주민 등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사업지원

- 제12조(농어촌 주민 등의 이동권 보장 및 공공교통소외지역 지원 및 해소를 위한 재정지원 등) ① 국가는 제9조에 따라 시행계획이 수립되는 경우 해당 계획에서 실시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에서 보조하거나 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교통소외지역 교통체계의 운영을 위하 여 부담하는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 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하 여서는 예산을 편성할 때 우선 반영하고 사업별로 지원규모나 보조 비율 등에 차등을 둘 수 있다.
 - 1.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효과가 미치는 사업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 2. 그 밖에 공공교통소외지역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13조(공공교통소외지역 공공교통요금 감면) ① 공공교통소외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자가 공공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그 이용 요금은 무료로 한다.
 -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면제된 공공교통수단의 운임 비용의 100분의 60 이상을 부담한다.
- 제14조(공공교통소외지역지원특별회계 설치) ① 농어촌 주민 등의 이동권 보장 및 공공교통소외지역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공공교통소외지역지원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 ②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그 밖의 수입
 - 2. 제12조에 따른 국고보조금 및 지방자치단체의 분담사업비
 - 3.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세입결산분 중 공공교통소외 지역계정 분담금
 - 4.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5조의2에 따른 공공교통소외지역계정에 대한 보조금
 - 5.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공공교통소외지역계정에 대한 보조금
 - 6.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 7.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 금 중 기초지원계정

- 8.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5조에 따른 혼잡통행료,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같은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
- 9. 그 밖에 특별회계로 조성 가능한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④ 특별회계의 수입금은 농어촌 주민 등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기반 조성 및 교통서비스 제공, 공공교통소외지역 공공교통수단 및 시설의 확충과 교통체계 구축 및 운영 개선을 위한 사업에 사용할 수있다.

제5장 보칙

- 제15조(보고·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교통운영자에 대하여 공공교통수단 또는 공공교통시설의 소유·운영과 보조금·융자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교통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공공교통운영자의 시설·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16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고, 시·도지사의 권한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교통과 관련하여 전문성을 보 유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장 벌칙

- 제1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8조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자
 - 2.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으로 한 자
 - 3. 제15조제2항에 따른 검사 또는 질문에 불응하거나 이를 방해 또 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 통부장과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공공교통시설"을 "공공기관교통시설"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공공교통시설의"를 "공공기관교통시설의"로, "공공교통시설"을 각각 "공공기관교통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공공교통시설"을 각각 "공공기관교통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공공교통시설"을 "공공기관교통시설"로 한다.

제19조제1항 본문 중 "공공교통시설"을 각각 "공공기관교통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공공교통시설"을 "공공기관교통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공공교통시설"을 "공공기관교통시설"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공공교통시설"을 "공공기관교통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공교통시설"을 각각 "공공기관교통시설"로 한다.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공교통시설을"을 "공공기관교통 시설을"로 한다.

제113조 중 "공공교통시설"을 "공공기관교통시설"로 한다.